

충청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

검토보고

2000. 8. 28
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 안 자 : 충청북도지사 제출

2. 제안 및 회부 일자

- 제 안 : 2000년 7월 27일 제출
- 회 부 : 2000년 7월 27일

3. 제안이유

- 소중한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, 생물다양성을 보전함으로써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도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보전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

4. 주요골자

- 가.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, 수립시기·절차 및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
(안 제3조)

- 나. 관리야생동·식물등의 지정·대상·방법·보호 및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4조 내지 제6조)
- 다.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, 관리기본계획, 행위제한, 출입제한, 중지명령, 임시생태계보전지역, 생태계보전지역 등의 표지, 생태계보전지역의 토지매수,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원, 완충지역, 생태계의 보호·복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7조 내지 제17조)
- 라. 자연환경조사의 시기·대상지역·기간·내용·방법·자료 활용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8조)
- 마. 정밀조사등의 실시, 자연환경조사에 대한 협조, 조사자료의 체계적관리, 생태계의 변화관찰, 자연환경조사원, 생태·자연도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9조 내지 제24조)
- 바. 자연휴식지의 관리, 자연경관의 훼손방지, 공공시설의 녹화, 자연형 하천정비,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, 교육·홍보, 국제협력의 증진,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25조 내지 제32조)
- 사. 조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정함(안 제33조)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안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, 생물다양성을 보전함으로써 괘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하기 위한 목적으로

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도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

- 조례제정 근거 및 제정절차상 그리고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타당하고 사료됨
- 다만 주민생활에 일부 규제를 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됨